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35
----------	-------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 의 자 : 최은석·김태규·김은혜
박덕흠·박대출·김상훈
우재준·이인선·김승수
강대식·권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이 소비자물가 변동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보상금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소음영향도 조사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실효성과 소음영향도 조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변지역”을 “주변지역(이하 “소음영향도 조사지역”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뢰하여야”를 “의뢰하되, 소음영향도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음영향도 조사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켜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주기·방법 및 기준”을 “주기·방법·기준·고시 및 재조사”로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소음영향도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음영향도 조사지역 주민대표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 결과가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재조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재조

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해당 소음영향도를 조사한 자 외에 다른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그 재조사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매년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영향도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국방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생략)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u>주변지역</u> 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 ----- ----- ----- <u>주변지역(이하 “소음영향도 조사지역”이라 한다)</u> ----- -----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u>의뢰하여야</u> 한다.	③ ----- ----- ----- ----- ----- <u>의뢰하되, 소음영향도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음영향도 조사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켜야</u> -----.
<신 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소음영향도 조사지역을 관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 절차 등) ①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

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음영향도 조사지역 주민대표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 결과가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재조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재조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해당 소음영향도를 조사한 자 외에 다른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그 재조사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주기·방법
· 기준·고시 및 재조사-----

-----.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 절차 등) ① -----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매년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